

농산물 관련 WTO 분쟁에 관한 실증 분석

권영민*

Keywords

WTO 분쟁해결(WTO dispute settlements), 농산물(agricultural products),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130 agricultural products related disputes filed through the WTO from 1995 to 2010. Simple descriptive statistics show that the US and Cairns group members have been the most active participants of the disputes on agricultural products not only as complainants but also as respondents.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nd Agreements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have been the most frequently invoked provisions in agricultural product cases.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disputes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be pending, while th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gap between participant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the disputes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While relatively more ILA cases are settled and AG cases remain pending, SPS related cases are often taken to panel process. With these control variables considered, the cases involved with the Cairns group are shown to be more probable to proceed in panel stage, while cases against developing countries and frequently accused members, like the EU and Korea, are less likely to enter that stage. Also it is very difficult for complainants to get satisfactory results against the US and Cairns countries. Developing country complainants seem to be the especially poor performer.

차례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3. 농산물 관련 분쟁의 동향
4. 계량적 실증분석
5. 요약 및 시사점

*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e-mail: y_kwon@mju.ac.kr

1. 서론

한·중, 한·뉴질랜드, 한·캐나다, 한·호주 FTA 등의 협상이 타결되거나 협정의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되면서 최근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은 주로 FTA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FTA는 협정 당사국에만 혜택을 주고 역외국을 차별하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WTO를 통한 다자간 체제의 교역자유화에 대한 차선책으로 간주되곤 한다. 따라서 현재는 비록 공식적으로 중단 상태에 있지만 WTO의 DD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¹ 특히, 올해는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벌써 만 20년이 되는 해이다. 8년 가까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GATT 체제가 막을 내리고 국제교역질서의 새로운 장이 열렸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였다. 즉, 공산품의 관세인하에 치중했던 GATT와 달리 WTO에서는 농산물, 비관세장벽,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관장하게 되면서 많은 진통이 있었다.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우리가 겪었던 혼란과 갈등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정부는 쌀시장의 개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관세화 시기를 10년 유예시킴으로써 성공적인 협상을 벌인 것으로 자부하였다. 그 후 한 차례 10년을 더 미루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대신 수입쌀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국내 쌀 생산량이 과잉인 상태에서 관세화 유예를 위해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은 여전히 논란거리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쳐 WTO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활발했던 국내학계의 WTO 농산물 분야 연구는 그러나 점차 수그러들었고 최근 들어는 그 수도 적고 주제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² 그러나 해외 학계에서는 농업을 비롯한 WTO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20년간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연구들이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그와 같은 연구가 전

¹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 농업, 면화, 저개발국 의제에 대한 조기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도 주요국들의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DDA 협상의 본격적인 재개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² 제2장의 기존연구 검토에서 국내와 해외 학계의 WTO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혀 없는 것은 아니나 농업 분야와 관련된 그러한 형태의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농업과 농산물 분야는 교역량 대비 WTO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정도로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지난 20년간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한국이 피소된 14건 가운데 절반인 7건이 관련될 정도로 중요한 주제의 연구가 미흡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제기된 농산물 분야의 분쟁 추이를 살펴보고 그 전개과정과 결과 등을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하에서 본 논문은 우선 현재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WTO 협정과 농산물 분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며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제3장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농업 및 농산물 분야 분쟁의 동향을 개괄적 통계분석을 통해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Horn & Mavroidis(2008)가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 아래 추적하고 있는 WTO 분쟁해결 데이터베이스³를 이용한 비교적 초기의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본 저자도 그랬지만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를 스스로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해 실증연구가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아무쪼록 본 논문을 통해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 WTO 체제에서 우리 농산물 분야가 조금이라도 더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앞서도 언급했듯이 국내에서 WTO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WTO에 대한 국내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아마도 UR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시기부터 WTO 초기까지 몇 년간이라 하겠다. 농업 분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발간된 보고서들이 있다. 이정환 외(1995), 서종혁 외(1996) 등은 UR 협정의 내용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이어 최세균 외(1996), 채욱·서창배(1999), 송유철 외(2000) 등은 WTO 체제에서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⁴ 방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김덕용(1995), 이성

³ WTO Dispute Settlement Database, World Bank(<http://go.worldbank.org/X5EZPHXJY0>).

덕(1996), 마재신(1999), 이신규(2000) 등 개별연구들도 초기에는 WTO 농업협정의 내용과 향후 전망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후에 보다 구체적 내용을 주제로 다룬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임정빈·김동민(2000)은 관세할당제, 박재근·임재환·구승모(2002)는 쌀 생산전략, 최세균(2002)은 관세감축 방식, 이용기(2003)는 농업의 다원적 가능성을 각각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WTO 체제의 농산물 분쟁에 관한 연구는 등장 시기가 비교적 늦는데, 그 이유는 관심이 가는 분쟁사례와 자료가 축적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우리의 쇠고기 분쟁을 다룬 김은영(2001) 이후 최승환(2007)과 김두수(2013)는 EC의 유전자조작식품 분쟁, 성영화·박명섭(2010)은 미국의 면화보조금 분쟁, 김민철·최재영(2010)은 터키의 쌀 분쟁을 각각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 본 논문과 같이 실제 농산물 분쟁통계를 활용한 연구로는 양승룡·임성수(2005)를 들 수 있다. 즉, 1995년부터 2005년 8월까지 WTO에 제기된 분쟁을 통계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농산물과 관련된 분쟁사례와 결과 등을 분석하여 분쟁해결제도의 활용방안을 논의한 등 연구는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 차별성이 돋보인다. 그러나 기초적 통계에 주로 의존한 그들의 연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좀 더 심층적인 분석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한편 WTO와 농산물 분야에 관한 해외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국내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데, Rayner(1993)와 Guyomard(1993) 등은 UR이 종결되기 이전 이미 농업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Thomson(1996), Anderson & Neilsen(1997), Mah(1999) 등은 각각 유럽공동농업정책(CAP), 유전자조작(GMO), 긴급수입제한 등의 보다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00년대 들어서 Anderson(2000)은 농업의 다원성, Honma(2000)는 식량안보, O'Connor(2003)는 투명성 등 농업의 비교역적 성격과 WTO 농업협정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초기의 이들 연구들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WTO 협정을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WTO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Kastner & Powell(2002)와 Walkenhorst(2004) 등은 동식물검역 협정 관련 분쟁을, Hermann, Krumb, & Monnich(2003)은 유럽의 바나나 수입체제 분쟁을 다루고 있다. 특히, 실증연구가 부진했던 국내와 달리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일찍부터 등장하는데, Hudec(1997)은 WTO 초기 농산물 관련 분쟁을

4 UR 협상 당시 농업을 비롯한 분야에 대해 2000년경부터 시작한다는 소위 New Round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는 결국 2001년 말 DDA 협상의 시작으로 실현되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Donna(1998)는 동식물검역 협정에 관련된 분쟁을 자세히 살피고 있다. 또한 Josling, Zhao, Carcelen, Arha(2006)는 유예기간이 끝난 2002년 이후 보조금 관련 분쟁을, Josling(2009)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산물 관련 분쟁 전반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또한 아직은 단순한 통계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농산물 분야로 국한하지 않고 시각을 넓혀보면 시간이 가며 점차 축적되는 자료만큼이나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여 분쟁해결의 참여와 전개과정 등을 심층 분석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Horn, Mavroidis, & Nordstrom(1999)은 이항확률분포 모형을 통해 교역규모와 사법능력이 분쟁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Busch & Reinhardt(2003)는 Probit 모형을 통해 GATT와 WTO 체제의 양자합의 도출능력 차이를 검토했다. 그 밖에도 Holmes, Rollo, Young(2003), Besson & Medhi(2004), Bown(2005) 등은 각각 서로 다른 계량기법을 동원하여 WTO 분쟁참여와 성과도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연구경향을 농산물 관련 분야에 특화하여 적용해보려는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

3. 농산물 관련 분쟁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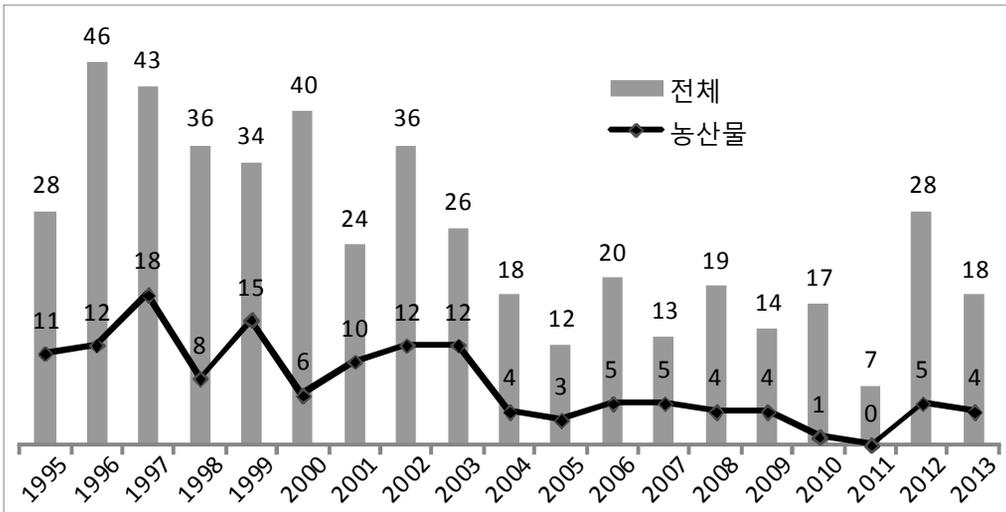
3.1. 연도별 분쟁추이

아래의 <그림 1>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양자협의를 요청된 전체 분쟁과 농산물 관련 분쟁의 연도별 발생추이를 나타내고 있다.⁵ 19년의 기간 동안 매년 평균 25.2건 정도의 분쟁이 발생했으며 그중 농산물 관련 분쟁은 평균 7.7건 정도가 발생하여 전체 분쟁의 30% 이상이 농산물 관련 분쟁인 것을 알 수 있다. WTO 출범 이후 2003년까지는 매년 평균 34.8건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는 아마도 GATT 부터 이어온 분쟁들이 WTO의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 이듬해부터는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20건

⁵ 일반적으로 WTO 분쟁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는 공동제소를 각각의 개별사안으로 취급하며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1년 이내 재발된 경우 하나의 분쟁으로 취급한다. 그와 같은 전통을 따른 본 논문은 아울러 EU와 개별회원국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제소를 EU에 대한 하나의 제소로 간주하였다. 그러한 방법에 따른 2013년까지의 분쟁 수는 모두 479개이며 그중 농산물 관련 분쟁 수는 139개로 집계되는데 이는 WTO 분쟁해결 홈페이지(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e.htm)의 공식집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하의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농산물 관련 분쟁도 2003년까지 평균 11.6건에서 그 이후 3.5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분쟁의 변동에 비해 농산물 관련 분쟁은 2010년,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3~5건이 제기될 정도로 비교적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림 1. WTO 분쟁의 연도별 추이



주: 본 논문에 제시된 모든 그림과 표는 Horn & Mavroidis(2008)에 의해 축적되고 있는 World Bank WTO Dispute Data Base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계산하고 작성한 것임.

3.2. 국가별 분쟁 현황

아래의 <표 1>은 제소를 기준으로 농산물 관련 분쟁이 많은 순으로 28개 WTO 회원국을 나열하고 있다.⁶ 84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을 제기한 미국은 농산물 관련 분쟁도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중도 34.5%여서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관련 비중으로 보면 헝가리의 100%를 비롯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호주, 과테말라 등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특히 농산물 관련 분쟁을 제기한 국가 중 절반인 13개국이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에 속한 국가이며, 이들의 농산물 관련 분쟁 비중이 대체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미국과 케언즈 그룹에 의한 농산물 분쟁 제기는 89건이며 이는 전체 농산물 관련 분쟁 130건의 63.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반면 각각 13건의 분쟁을 제기한 한국과 일본은 농산물 관련 분쟁의 제기가 한 건도 없었고 인도, 칠레, 중국, EU 등은 농산물 관련 분쟁의 제기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농산물 관련 분쟁의 국별 제소 현황

제소국	전체 제소	농산물	비중(%)	제소국	전체 제소	농산물	비중(%)
미국	84	29	34.5	코스타리카*	5	2	40.0
EU	81	16	19.8	필리핀*	4	2	50.0
캐나다*	33	12	36.4	에콰도르	3	2	66.7
아르헨티나*	15	9	60.0	폴란드	3	2	66.7
브라질*	24	8	33.3	인도	19	1	5.3
뉴질랜드*	7	6	85.7	칠레*	10	1	10.0
멕시코	20	6	30.0	중국	7	1	14.3
호주*	7	6	85.7	인도네시아*	5	1	20.0
과테말라*	7	5	71.4	스위스	4	1	25.0
헝가리	5	5	100.0	니과라과	1	1	100.0
태국*	13	4	30.8	스리랑카	1	1	100.0
콜롬비아*	5	3	60.0	우루과이*	1	1	100.0
파나마	5	3	60.0	한국	13	0	0.0
온두라스	6	2	33.3	일본	13	0	0.0

*표시는 케언즈 그룹에 속한 국가임.

6 앞서의 연도별 추이와 달리 이후부터는 2010년까지 제기된 분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1년 농산물 관련 분쟁이 없었고 2012년 발생한 분쟁은 아직 결과가 나오기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분석은 전체 분쟁 426건과 농산물 관련 분쟁 130건에 관한 것이다.

7 WTO를 통해 분쟁을 제기한 회원국은 모두 43개국이지만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15개국은 농산물 관련 분쟁의 제소가 없어 <표 1>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아래의 <표 2>는 피소를 기준으로 농산물 관련 분쟁이 많은 순으로 22개 WTO 회원국을 나열하고 있다.⁸ 전체 피소를 기준으로 미국이 122건으로 가장 많지만 농산물 관련 피소는 EU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피소 82건의 47.6%에 해당된다. 그러나 농산물 관련 비중으로 보면 슬로바키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트리니다드 & 토바고, 크로아티아, 파나마가 100%로 가장 높지만 이들의 분쟁은 각각 1~3건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헝가리, 칠레, 한국, 멕시코 등은 적지 않은 분쟁피소 가운데 농산물 관련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칠레,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필리핀 등 케언즈 그룹에 속한 국가는 6개로 앞서의 분석과 연결하여 이들 그룹 국가는 분쟁제도 많지만 분쟁피소도 많아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준다.

표 2. 농산물 관련 분쟁의 국별 피소 현황

피소국	전체 피소	농산물	비중(%)	피소국	전체 피소	농산물	비중(%)
EU	82	39	47.6	일본	15	3	20.0
미국	122	20	16.4	슬로바키아 공화국	3	3	100.0
인도	20	7	35.0				
칠레*	12	7	58.3	터키	8	3	37.5
한국	14	7	50.0	체코공화국	2	2	100.0
헝가리	7	6	85.7	루마니아	2	2	100.0
멕시코	13	6	46.2	트리니다드 & 토바고	2	2	100.0
캐나다*	15	5	33.3				
아르헨티나*	17	4	23.5	크로아티아	1	1	100.0
브라질*	13	4	30.8	파나마	1	1	100.0
호주*	9	3	33.3	필리핀*	5	1	20.0
중국	21	3	14.3	베네수엘라	2	1	50.0

*표시는 케언즈 그룹에 속한 국가임.

⁸ WTO를 통해 분쟁을 피소당한 회원국은 모두 51개국이지만 앞서 <표 1>과 마찬가지로 29개 국은 농산물 관련 분쟁의 피소가 없어 <표 2>에서 제외되었다.

3.3. 협정별 분쟁 현황

농산물 관련 분쟁이 많은 순으로 협정을 나열하고 있는 아래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협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WTO 협정들이 농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분쟁 빈도가 가장 많은 협정은 GATT이지만 WTO의 가장 기본이랄 수 있는 GATT 협정은 다른 분쟁에도 관련되는 빈도가 높고 따라서 농산물 관련 협정의 비중은 32.3%에 지나지 않는다. 농산물 관련 분쟁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전체 분쟁 중 95.9%가 관련된 농업협정이다.⁹ 그러나 농업협정 이외에 동식물검역과 수입면허 협정도 전체 분쟁 중 농산물 관련 분쟁 비중이 8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1건의 농산물 관련 분쟁이 있었던 기술장벽 협정도 전체 분쟁 41건의 절반이 넘어 50% 이상의 비중을 보이는 중요한 협정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분쟁해결양해와 원산지 협정도 관련 빈도는 낮지만 전체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다. 반면에 농산물 관련 비중은 낮으나 보조금, 세이프가드, 무역투자 협정도 관련 빈도가 높은 협정이다.

표 3. 협정별 농산물 관련 분쟁 현황

협정	전체 분쟁	농산물	비중(%)	협정	전체 분쟁	농산물	비중(%)
GATT	334	108	32.3	분쟁양해	15	7	46.7
농업	73	70	95.9	GATS	22	7	31.8
동식물검역	36	30	83.3	WTO	51	5	9.8
수입면허	35	29	82.9	중국가입	16	3	18.8
기술장벽	41	21	51.2	원산지	7	3	42.9
보조금	87	20	23.0	섬유의류	16	2	12.5
세이프가드	39	14	35.9	TRIPs	27	2	7.4
무역투자	27	10	37.0	권능조항	4	1	25.0
반덤핑	94	9	9.6	관세정확성*	1	1	100.0

*는 Ministerial Decision on Truth or Accuracy of the Declared Custom Value.

⁹ WTO 협정의 기준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수산물을 농산물의 범주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김 수입쿼터분쟁(DS323)과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각각 EU를 상대로 제기한 물개 제조품 수입금지 조치에 관한 분쟁(DS401, DS402)은 농업협정을 함께 언급하며 분쟁이 제기되었지만 농산물 관련 분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4. 분쟁의 전개

이상에서의 내용은 양자협의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한 것으로 분쟁의 시작단계에 대한 분석이며 결과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그 이후의 분쟁전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우선 60일 이내의 양자협의 이후 패널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어 6개월 이내의 패널조사와 90일 이내의 상소기구심의를 거쳐 12~15개월이면 판결이 내려지도록 고안되었다.¹⁰ 그러나 지난 20년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분쟁해결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아래의 <표 4>를 통해 설명해보기로 하자. 우선 양자협의를 통해 합의¹¹가 이루어진 전체 분쟁 수는 100건이며 이는 제기된 모든 분쟁의 23.5%에 해당된다. 농산물과 관련된 분쟁은 42건이 양자합의에 이르렀는데 이는 제기된 분쟁의 32.3%로 양자협의 비율이 전체보다 10%p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양자협의 중에 있는 분쟁은 앞서 60일 이내의 양자협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의 중으로 파악되는 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은 전체 118건이며 그중 농산물 관련 분쟁은 43건이다. 따라서 양자협의 중인 분쟁은 전체의 27.7%이고 농산물 관련 분쟁 중에는 33.1%이라 이 역시 농산물 관련 분쟁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패널설치 요청 이후에도 진전이 없는 분쟁들이 있는데, 전체 분쟁 중 12건은 패널설치 요청만 된 상태이고 1건은 패널 구성만 된 상태이며 11건은 패널권한이 종료된 상태로 모두 24건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 농산물 관련 분쟁 중에는 패널설치 상태 5건과 패널권한 종료상태 2건으로 모두 7건이 이 단계에 있어 그 비율은 전체 분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보류상태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패널이 진행되고 보고서가 채택된 비율은 농산물 관련 분쟁이 전체 분쟁보다 낮다. 즉, 보고서가 채택된 분쟁의 수는 전체 분쟁에서 권고조치가 포함된 경우는 159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5건이다. 이는 제기된 분쟁의 각각 37.3%와 5.9%로 전체 중 43.2%에 해당하는 분쟁이 패널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산물 관련 분쟁은 권고조치가 포함된 보고서가 34건, 권고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보고서가 4건 채택되었다. 이는 제기된 분쟁의 각각 26.2%와 3.1%이며 이들을 합친 비율은 29.3%로 전체 분쟁보다 역시 10%p 이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농산물 관련 분쟁은 전체 분쟁에 비해 절차가 끝까지 진행되기 이전에 양자합의를 이루거나 보류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10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권영민(1998)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양자합의는 60일간의 양자협의 기간 이후에도 언제나 가능하며 <표 4>의 집계에도 그러한 경우가 물론 포함되어 있다.

표 4. 분쟁해결의 단계별 현황

단계	구분	전체 분쟁	비율(%)	농산물	비율(%)	
사전단계	양자합의	100	(23.5)	42	(32.3)	
	양자협의를	118	(27.7)	43	(33.1)	
패널단계	패널설치요청	12	(2.8)	5	(3.8)	
	패널구성	1	(0.2)	0	(0.0)	
	패널권한 종료	11	(2.6)	2	(1.5)	
보고서 채택단계	권고조치 미포함	25	(5.9)	4	(3.1)	
	권고조치 포함	159	(37.3)	34	(26.2)	
권고조치 이후*	권고조치 이행	이행방안 합의	21	(13.2)	7	(20.6)
		조치이행 통보	81	(50.9)	14	(41.2)
	이행여부 패널	진행 중	7	(4.4)	2	(5.9)
		미이행 판정	5	(3.1)	1	(2.9)
		이행 판정	5	(3.1)	0	(0.0)
	보복조치	요청	3	(1.9)	2	(5.9)
		허용	15	(9.4)	1	(2.9)

* 권고조치 이후는 권고조치 포함된 보고서 채택 중 비율.

한편 판결이 내려진 이후의 단계를 보면 권고조치 이행방안이 합의되거나 권고조치 이행이 통보된 전체 분쟁은 각각 21건, 13.2%와 81건, 50.9%로 집계된다. 권고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제소국의 이의제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만한 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판결이 내려진 전체 분쟁 중 64.1%가 만족스런 결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농산물 분쟁의 경우도 이행방안 합의 7건, 20.6%와 조치이행 통보 14건, 41.2%를 합치면 권고조치의 61.8%가 제소국의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전체 분쟁과 비슷한 수준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소국의 입장에서 권고조치 이행에 대해 불만을 가진 비율은 전체 분쟁이 농산물 관련 분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패널이 설치된 경우와 보복조치가 요청되거나 허용된 경우는 제소국의 입장에서 만족스런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전체 분쟁 중 이행패널이 진행 중이거나 미이행 또는 이행 판정이 내려진 경우가 각각 7건, 5건, 5건으로 이들을 합친 17건은 전체 권고조치 가운데 10.6%에 해당한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는 이행패널 진행

중 2건과 미이행 판정 1건을 합쳐 3건이며 이는 전체 권고조치의 8.8%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보복조치와 관련해서도 전체 분쟁 중에는 보복조치 요청 3건과 보복조치 허용 15건을 합쳐 18건인 11.3%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농산물 관련 분쟁은 보복조치 요청 2건, 보복조치 허용 1건을 합쳐 3건, 9.8%로 역시 전체 분쟁보다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5. 한국 관련 분쟁

이상에서는 WTO 전체의 분쟁과 농산물 분쟁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지만 이번 절에서는 한국이 관련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뒤에 결론 부분에서 다룰 시사점과 연결하기 위한 분석인데 <표 5>를 보면 우선 한국은 지금까지¹² 모두 13건을 제소하고 14건을 피소당했다. 국별로는 미국이 제소 8건, 피소 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소가 2건, 피소가 6건인 EU가 두 번째로 빈번한 분쟁상대국이다. 그 밖에 일본을 2건, 필리핀을 1건 제소하였으며 캐나다로부터 2건, 호주와 인도네시아로부터 각각 1건씩의 피소가 있었다. 연도별로¹³ 보면 제소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또한 피소는 WTO 출범초기인 1995년부터 1999년의 기간에 집중되어있는데 이는 앞서 WTO 전체 분쟁추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가장 빈번한 제소상대인 미국에 대한 분쟁은 양자합의 1건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패널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중에서 이행합의 1건, 이행통보 4건 등 원만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각 1건씩의 권고조치 없는 보고서 채택과 보복조치 허용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 하겠다. 한편 EU 제소 2건에 대해서는 이행합의와 이행통보로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제소는 양자합의와 패널권한 종료가 각 1건씩이며 필리핀에 대한 1건의 제소는 양자합의 중으로 파악된다. 한국이 제소한 13개 사안을 종합해 보면 본격적인 패널로 이어진 분쟁은 모두 9건으로 이는 앞서 전체 분석에서 50% 이상이 패널이전 단계에서 해결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보복조치 허용 1건을 제외하면 패널절차를 통해 대체로 원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¹² 앞서도 언급했듯이 본 논문의 통계와 계량분석은 1995년~2010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¹³ 연도별 제소는 1997년 2건, 2000년과 2003년 각 3건, 1999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9년 각 1건씩이 있었고 피소는 1995년, 1997년, 1999년에 각 3건, 1996년 2건, 2002년, 2004년, 2009년 각 1건씩이 있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말미의 <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5. 한국의 분쟁 현황

분쟁상대	제소					피소					
	미국	EU	일본	필리핀	소계	미국	EU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소계
상대별 합계	8	2	2	1	13	6(4)	4(1)	2(1)	1(1)	1	14(7)
양자합의	1		1		2	1(1)	1	2(1)			4(2)
양자협의				1	1	2(2)					2(2)
패널종료			1		1						
보고서 채택	1				1	1					1
이행합의	1	1			2						
이행통보	4	1			5	2(1)	3(1)		1(1)		6(3)
미이행 판정					0					1	1
보복허용	1				1						

주: () 안은 농산물 관련 분쟁.

피소 측면을 보면 미국이 제소한 6건 중 4건이 농산물 관련¹⁴ 분쟁으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U로부터는 4건 중 1건이 농산물 관련 분쟁이지만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와 호주로부터는 각 1건씩의 농산물 관련 분쟁이 피소되어 관련 비율이 높다. 피소된 분쟁의 단계별 분석을 보면 우선 국별로 미국에 대해서 양자합의와 권고조치 없는 보고서 채택 각 1건, 이행통보 2건이 있었고 EU에 대해서는 양자합의 1건, 이행통보 3건이었다. 또한 캐나다에 대해 양자합의 2건, 호주에 대해 이행통보 2건, 인도네시아에 대해 미이행 판정 1건이 있었다. 종합해보면 14건의 제소 가운데 양자합의 4건과 양자협의 2건을 제외한 8건이 패널단계로 이행되었으며 이는 앞서 제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농산물 관련 분쟁만 놓고 본다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제기한 7건의 분쟁에 대해 양자협의와 양자합의가 각각 2건으로 패널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쟁이 절반을 넘는다. 보고서 채택 이후를 보면 전체 8건 가운데 미국에 대한 승소판결로 인한 권고조치 없는 보고서 1건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권고조치 미이행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권고조치 이행이 통보되었으며 농산물 관련 분쟁만 놓고 본다면 3건 모두 권고조치 이행이 통보되

¹⁴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은 농산물 관련 분쟁의 제소가 없으며 피소는 14건 중 7건이 해당되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농산물 관련 피소비중이 높은 편이다. 개별협정 가운데 한국의 제소는 주로 반덤핑, 보조금협정 등에 집중되었고 피소는 농업, 동식물검역, 기술장벽, 수입면허 등 농산물 관련 협정에 골고루 퍼져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본 논문 말미의 <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었다. 결국 앞서 양자협의¹⁵나 양자협의까지 포함하면 농산물 관련 분쟁의 피소는 모두 제소국의 입장에서 대체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6. 통계분석의 정리

앞서의 통계분석은 그동안 WTO 체제를 통한 농산물 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우선 농산물 관련 분쟁의 제소는 미국을 비롯해 농산물 주요 수출국의 모임인 케언즈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산물 관련 분쟁의 피소는 EU를 상대로 한 분쟁이 가장 많으며 농산물 관련 분쟁의 비중으로 보면 헝가리, 칠레, 한국, 멕시코 등이 주요 피소 대상국이다. 또한 앞서의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농산물 분쟁의 제기도 많지만 동시에 피소되는 경우도 많아 농산물 교역에 대한 이들의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다. 협정별로 보면 WTO의 거의 모든 협정이 농산물 관련 분쟁의 대상이 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 동식물검역, 수입면허 협정 등은 관련 건수와 비중이 있어 농산물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은 양자협정이 요청되는 분쟁의 초기단계에 대한 분석이지만 제기된 분쟁의 전개과정을 보면 농산물 관련 분쟁의 또 다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농산물 관련 분쟁은 양자협정에 이르는 비율이 전체 분쟁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자협정에 이르지 못했지만 실제로 패널절차가 진행되는 비중은 농산물 관련 분쟁이 전체 분쟁보다 낮는데 이는 농산물 관련 분쟁은 진전 없이 보류상태로 남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이다. 한편, 일단 패널절차가 끝까지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진 경우 권고 조치 이행은 농산물 관련 분쟁이나 전체 분쟁이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이행된 조치에 대해 제소국이 불만을 가지고 추가조치 단계로 전개되는 비율은 농산물 관련 분쟁이 전체 분쟁보다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산물 관련 분쟁이 각 단계별로 매우 신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산물 분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제소한 측이나 피소된 측이나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¹⁵ WTO의 공식자료에 양자협의로 파악되는 농산물 검역제도에 대한 2건의 분쟁(DS3, DS41)도 사실은 미국이 GATT 시절부터 계속 해결을 요구하던 사안으로 WTO 출범 직후 제소하고 1년 후 또 다시 제소할 정도로 집착하던 문제이다. 당시 정부는 식품검역 제도를 완화하는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자협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신중함은 한국이 피소된 분쟁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우선 한국은 전체 14건의 분쟁피소 가운데 절반인 7건이 관련될 정도로 농산물 분야의 개방에 방어적인 입장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의 7건 가운데 미국과 케언즈 그룹으로부터 제기된 분쟁이 6건으로 한국은 그만큼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요 관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제기된 농산물 분쟁에서 한국은 5건에 대해 양자협이나 권고조치 이행을 통보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문제를 부각시키기보다 제소국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용히 해소하려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장의 통계분석은 그동안 WTO를 통한 농산물 관련 분쟁해결의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들을 알려준다. 그러나 단순한 통계분석만 가지고는 그러한 특징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그러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계량모형을 설정하고 이어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4. 계량적 실증분석

4.1. 계량분석모형 설정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양자협의 요청을 통해 일단 제기된 분쟁이 합의에 이르거나 또는 본격적인 패널절차로 이행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0과 1의 이항분포를 가지는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불편성(unbiasedness)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수의 표본을 필요로 하며 또한 이분산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선형 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종속변수가 0과 1을 벗어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WTO의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Logit 회귀모형은¹⁶ 다음과 같은 누적확률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text{Prob}(y = 1) = \Lambda(\beta'X) = \frac{1}{1 + e^{-\beta'X}}$$

¹⁶ WTO의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에서는 Probit 모형이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 더 널리 쓰이는 Logit 모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하에서 본 논문은 종속변수(y)의 정의와 독립변수(X)의 조합에 따라 구분되는 3개의 모형을 설정하고 각각의 모형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모형 1의 종속변수는 우선 양자협회가 요청된 분쟁이 양자합의에 이르는 경우를 나타내며 분쟁이 양자합의에 이르면 1, 그렇지 못하면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모형 2의 종속변수는 분쟁이 본격적인 패널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나타내며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1, 그렇지 못하면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의 종속변수는 제기된 분쟁이 제소국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를 나타내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면 1, 그렇지 못하면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¹⁷ 한편 다음의 <표 6>은 본 논문의 회귀분석을 위해 채택된 독립변수들을 설명하고 있다.

표 6. 독립변수의 설명

독립변수	정의	평균	표준편차
c_us	미국의 제소=1, 아니면=0	0.2231	0.4179
r_us	미국의 피소=1, 아니면=0	0.1538	0.3622
c_eu	EU의 제소=1, 아니면=0	0.1231	0.3298
r_eu	EU의 피소=1, 아니면=0	0.3	0.46
c_ad	선진국의 제소=1, 아니면=0	0.5385	0.5004
r_ad	선진국의 피소=1, 아니면=0	0.5385	0.5004
c_dv	개발도상국의 제소=1, 아니면=0	0.3538	0.48
r_dv	개발도상국의 피소=1, 아니면=0	0.2	0.4015
c_crn	케언즈 그룹 국가의 제소=1, 아니면=0	0.6846	0.4665
r_crn	케언즈 그룹 국가의 피소=1, 아니면=0	0.3385	0.475
r_fre	농산물 관련 피소비중이 높은 국가*의 피소=1, 아니면=0	0.2462	0.4324
neigh	인접국(동일 대륙 내)과의 분쟁=1, 아니면=0	0.2769	0.4492
dtsia	제소국의 농산물 산업특화지수-피소국의 농산물 산업특화지수	-0.1074	0.488
dshare	피소국의 제소국 시장점유율-제소국의 피소국 시장점유율	0.0235	0.1921
dgdpp	제소국의 일인당 GDP-피소국의 일인당 GDP	-1235.44	20039.1
ag	농업협정 관련 분쟁=1, 아니면=0	0.5385	0.5004
sps	동식물검역 협정 관련 분쟁=1, 아니면=0	0.2308	0.423
ila	수입면허 협정 관련 분쟁=1, 아니면=0	0.2231	0.4179

* <표 2>에서 농산물 관련 피소 비중이 50%를 넘는 국가들을 포함.

17 제소국의 입장에서 만족하는 분쟁해결은 결국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채택된 보고서의 권고조치가 원만하게 이행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권고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패널이 열리거나 보복조치가 요청된 경우는 만족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없다.

우선 위에서부터 11개의 변수는 주요국 또는 그룹의 제소와 피소에 따른 분쟁의 전개와 성과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한 독립변수들이다. 우선 c_{us} , r_{us} , c_{eu} , r_{eu} 는 WTO의 양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U의 제소나 피소가 분쟁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c_{ad} , r_{ad} , c_{dv} , r_{dv} 는 WTO 분쟁해결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분쟁해결 형평성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또한 c_{cm} 과 r_{cm} 은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인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 국가의 제소와 피소가 분쟁해결의 전개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한 변수이다. 이어 r_{fre} 는 케언즈 그룹과 달리 농산물 관련 분쟁의 피소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따로 설명하고자 채택된 변수이다.

한편 $neigh$ 이하의 4개 변수는 일종의 통제변수로 국가 또는 그룹의 차이 이외에 분쟁해결의 전개와 결과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우선 $neigh$ 는 분쟁당사국들이 인접국인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이는 인접국의 특성상 단순한 경제적 또는 법리적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dtsia$ 는 제소국과 피소국의 농산물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의¹⁸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분쟁당사국들의 농산물 경쟁력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변수이다. $dshare$ 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 대해 피소국의 제소국 시장점유율과 제소국의 피소국 시장점유율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상대방 시장에 대한 의존도 차이에 따른 경제적 유인이 분쟁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dgdpp$ 는 제소국과 피소국의 일인당 GDP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WTO 분쟁해결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제소국과 피소국의 사법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대용변수이다. 즉, 이는 GATT와 달리 사법성을 강조한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마지막의 ag , sps , ila 는 농산물 관련 분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들로서 앞서 <표 3>에서 보았듯이 농산물 관련 분쟁의 비율이 80%가 넘는 농업, 동식물검역, 수입면허 협정과 관련된 분쟁여부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이 정의한 변수들에 대한 각각의 관측치는 WTO, World Bank, FAO, UN¹⁹ 등의 공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할 수 있다.

¹⁸ TSI는 (상품의 총 수출액 - 상품의 총 수입액) ÷ (상품의 총 수출액 + 상품의 총 수입액)으로 정의되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을, -1에 가까울수록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¹⁹ 각각의 통계자료에 대한 온라인 출처에 대한 정보는 뒤의 참고문헌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4.2. 계량분석 결과

아래의 <표 7>은 이상에서 정의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구분되는 3개의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모형 1과 모형 2는 WTO를 통해 양자협약이 요청된 130개 농산물 관련 분쟁 중 양자합의에 이른 경우와 본격적인 패널절차를 거친 경우에 대한 분석으로 앞서 설명한 18개 독립변수를 모두 채택한 회귀모형이다.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을 아래쪽 통제변수들부터 살펴보면 모형 1의 *neigh*는 음(-)의 부호를 갖는데 이는 인접국 간의 분쟁이 양자합의에 이른 경우가 많지 않음을 나타낸다. 모형 2에서도 이 변수의 추정치가 음(-)의 값을 갖는 것과 함께 해석하자면 이웃국가 간의 분쟁은 합의나 패널절차를 밟기보다 보류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즉, 이는 앞서도 설명했듯이 인접국 간에 단순한 경제논리나 법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 *dtsia*는 모형 1에서는 양(+), 모형 2에서는 음(-)의 추정치를 갖는데 이는 제소국과 피소국의 농산물 수출경쟁력 차이가 클수록 양자합의에 이른 경우가 많고 패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다는 의미이다. 이는 농산물 경쟁력이 높은 국가의 제소에 대해 그렇지 못한 국가는 분쟁절차를 거치기보다 미리 양보하고 합의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분쟁절차를 거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할 때 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의 *dshare*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음(-)의 부호 추정치를 갖는데 이는 제소국에 대한 피소국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양자합의나 패널절차를 밟기보다 보류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존연구들과는 좀 다른 결과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의 분쟁이지만 국내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여 합의를 이루거나 패널절차에 돌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쟁상대국의 사법능력 차이를 나타내는 대용변수 *dgdpp*의 추정치도 두 모형에서 모두 음(-)의 부호를 가져 양자합의나 패널절차보다 보류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이 역시 기존 연구와는 좀 다른 결과인데 *dshare*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신중성이 요구되는 농산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그 다음의 협정변수 가운데 *ag*는 두 모형에서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며 *sps*는 모형 1에서 음(-), 모형 2에서 양(+), *ila*는 모형 1에서 양(+), 모형 2에서 음(-)으로 반대의 부호를 가진다. 이는 농업협정 관련 분쟁은 보류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고, 동식물검역 협정 관련 분쟁은 양자합의보다 패널절차를 거친 경우가 많

으며, 수입면허 협정 관련 분쟁은 양자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뒤에 결론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는 현행 협정의 특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예를 들어 동식물검역 협정의 경우 현행 협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요구되고 있지만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합의보다는 분쟁절차를 거쳐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상의 통제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감안하여 이제 표 위쪽의 국가 또는 그룹별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자. 우선 c_{us} 와 r_{us} 는 모형 1에서 음(-), 모형 2에서 양(+)²⁰의 값을 가지면서 미국이 제소 또는 피소된 분쟁의 경우 양자합의에 이르기보다 패널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이는 미국이 농산물 관련 분쟁에서 그만큼 더 적극적인 공세와 방어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c_{eu} 는 모형 1에서 음(-)의 값, 모형 2에서는 양(+)²⁰의 값을 가지며 r_{eu} 는 두 모형에서 모두 양(+)²⁰의 부호를 갖는다. 특히, c_{eu} 는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도 95% 이상의 유의성을 갖는데 이는 EU가 제소한 분쟁에서는 양자합의가 매우 힘들다는 의미이다.²⁰ 그러나 EU가 피소된 분쟁은 양자합의나 패널절차에 이르는 경우가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나머지 그룹별 변수 가운데 통계적 의미가 큰 경우를 위주로 살펴보자면 우선 개발도상국이 피소된 경우인 r_{dv} 는 모형 2에서는 음(-)의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 유의수준도 95% 이상이다. 즉, 개발도상국이 피소된 경우는 패널절차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모형 1의 추정치를 보면 양(+)²⁰의 부호를 가지지만 그 값이 매우 작아 양자합의보다는 보류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케언즈 그룹이 제소를 나타내는 c_{cm} 은 양(+)²⁰의 부호를 갖고 통계적 유의수준 역시 95% 이상이다. 모형 1이 음(-)의 값을 갖는 것과 함께 해석하면 케언즈 그룹의 제소는 양자합의나 보류보다 패널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가 된다. 앞서 두 변수보다는 못하지만 모형 2의 r_{cm} 과 r_{fre} 도 어느 정도 통계적 의미를 가진다. 양(+)²⁰의 추정치를 갖는 r_{cm} 은 케언즈 국가가 피소된 경우에도 패널절차로 갈 가능성이 큰 것을 나타내며 이는 케언즈 국가들이 제소나 피소나 모두 농산물 분쟁에 관심이 높다는 앞서의 분쟁 현황분석과 같은 맥락에 있다. 마지막으로 r_{fre} 는 상대적으로 농산물 분쟁의 피소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모형 1에서 양(+)²⁰의 부호를, 모형 2에서 음(-)의 부호를 가져 패널절차를 밟기보다 양자합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²⁰ EU가 제기한 16건의 분쟁 가운데 양자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호주의 검역격리체계에 관한 분쟁(DS 287) 한 건 뿐이다.

한편 모형 3은 앞선 두 모형의 독립변수 중 일부를 제외하고²¹ 패널 절차를 거친 경우와 제소국의 입장에서 만족스런 분쟁해결이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한 것이다. 모형 3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r_{us} 는 음(-)의 부호를 가지며 또한 추정치의 값도 매우 높다. 이는 미국이 피소당한 농산물 분쟁에 대해 제소국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매우 힘든 것을 나타낸다. 통계적으로도 99% 이상의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지는 이 결과는 앞서 모형들과 연결해서 해석하자면 미국을 제소한 경우 양자합의도 어렵지만 패널절차를 밟아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확률이 크게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쟁전개 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방어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UR 당시부터 작용해온 WTO 내 미국의 영향력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반면에 c_{dv} 는 역시 음(-)의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모형분석 결과와 함께 해석할 경우 이는 개발도상국이 제기한 분쟁은 양자합의나 패널절차보다는 보류상태에 놓여 제소국의 입장에서 만족스런 해결의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단 분쟁을 제기해도 양자합의를 이끌지 못하면서 분쟁절차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음(-)의 부호를 갖는 r_{cm} 은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낮지만 앞의 모형과 함께 볼 때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더라도 만족스런 성과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케언즈 그룹도 분쟁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펼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어느 정도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는 사법적 능력 차이를 나타내는 대응변수인 $dgdpp$ 와 동식물검역 협정 관련 분쟁을 나타내는 sps 변수이다. 두 변수 모두 음(-)의 추정치를 가지는 우선 $dgdpp$ 의 경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소 의외의 결과이지만 이는 역시 모형 1과 모형 2에서 설명한 대로 농산물 분야의 정치적 민감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sps 변수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모형 3에서 앞선 두 모형의 선진국 변수인 c_{ad} 와 r_{ad} 가 제거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²² 마지막으로 상수항의 통계적 유의성도 높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분석 결과의 해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1 이는 농산물 관련 분쟁해결의 성과를 검토하는 모형 3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이다. 즉, 농산물 분야의 주요국인 미국, 케언즈, 개도국은 그대로 두되 중복가능성이 의심되는 선진국 변수를 제외하고 또한 농산물 분야의 피소비중이 높은 국가와 함께 EU의 피소 경우만 살펴보기로 한다. 독립변수의 수가 줄며 자유도가 하락하고 그 결과 아래쪽의 로그 우도 χ^2 값이 앞서 두 모형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오차확률 0.25%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모형의 정확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위생검역협정과 관련된 모두 30건의 분쟁 가운데 선진국의 제소와 피소는 각각 20건과 18건으로 선진국 변수의 제거는 모형에서 sps 변수의 설명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7. Logit 회귀분석 결과

농산물 관련 WTO 분쟁에 관한 실증 분석

	모형 1 (양자합의)		모형 2 (패널절차)		모형 3 (성과달성)	
	추정치 (표준편차)	z-value	추정치 (표준편차)	z-value	추정치 (표준편차)	z-value
c_us	-1.987179(1.228437)	-1.62	3.084726(1.637246)	1.88	.6289662(.701842)	0.90
r_us	-1.937689(1.809361)	-1.07	1.523443(1.307261)	1.17	-3.082456(1.097154)	-2.81***
c_eu	-4.177557(1.544651)	-2.70**	1.771952(1.700954)	1.04		
r_eu	.2572746(1.368499)	0.19	.063602(1.116064)	0.06	-.9287433(.9194795)	-1.01
c_ad	.7020825(1.547039)	0.45	-.9470286(1.792254)	-0.53		
r_ad	-.9347149(1.69489)	-0.55	-2.460536(1.979038)	-1.24		
c_dv	.02921(1.099361)	0.03	-2.737187(1.549829)	-1.77	-1.821308(.7066166)	-2.58**
r_dv	.0063069(.7381658)	0.01	-3.937427(1.676371)	-2.35**	-.9818011(.6127769)	-1.60
c_cm	-1.398726(.836825)	-1.67	3.246954(1.374091)	2.36**	1.131715(.5823732)	1.94
r_crn	-1.069784(.8786273)	-1.22	2.634314(1.183448)	2.23*	-1.382323(.6868663)	-2.01*
r_fre	.7042347(.7881973)	0.89	-2.575347(1.230321)	-2.09*	-.1319601(.6213934)	-0.21
neigh	-1.934307(.8789593)	-2.20*	-1.361528(.9063008)	-1.50	-.8215237(.5606504)	-1.47
dtisia	.3322981(.5438333)	0.61	-.2629921(.522281)	-0.50	-.5890455(.5088942)	-1.16
dshare	-1.568478(2.79329)	-0.56	-2.345528(2.071149)	-1.13	-1.372104(1.774032)	-0.77
dgdpp	-.0000176(.0000438)	-0.40	-.0000629(.0000453)	-1.39	-.000048(.0000241)	-1.99*
ag	-.5373121(.6107121)	-0.88	-.0187761(.5545811)	-0.03	-.7242858(.5457064)	-1.33
sps	-.3012262(.6206411)	-0.49	.0575094(.6039228)	0.10	-1.055706(.5126328)	-2.06*
ila	.6634484(.5950963)	1.11	-.3474519(.7258226)	-0.48	1.183521(.6056914)	1.95
상수항	1.539417(1.374121)	1.12	.2339588(1.582814)	0.15	1.927224(.8304232)	2.32**
자유도	18		18		15	
LR χ^2	40.55		45.18		34.92	
Prob > χ^2	0.0018		0.0004		0.0025	

* p < 0.1, ** p < 0.05, *** p < 0.01, Two-sided.

5.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양자협의를 요청된 농산물 관련 분쟁의 현황과 전개과정을 개괄적 통계분석과 계량경제학적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WTO 분쟁 가운데 농산물 관련 분쟁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2004년 이후에는 분쟁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년 꾸준히 분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개괄적 통계분석을 통해,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케언즈 그룹의 분쟁제소가 활발한 가운데 농업협정을 비롯해 동식물검역과 수입면허 협정의 농산물 분쟁 관련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산물 관련 분쟁은 양자합의에 이르거나 보류상태로 남는 비중이 전체 분쟁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산물 분쟁의 그러한 특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Logit 회귀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 확인한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접국가의 분쟁은 보류상태에 남는 경우가 많고 농산물 분야의 경쟁력 차이는 분쟁당사국 사이의 양자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패널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 가운데 동식물검역 협정은 패널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농업협정은 보류상태에 남는 경우가 많고, 수입면허 협정은 양자합의 가능성이 높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동식물검역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요구되지만 협정상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패널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현행 수입면허 협정은 비교적 명확한 내용을 지니고 있어 그만큼 양자합의가 쉬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농업협정은 불분명한 내용이 많아 양자합의나 패널절차 진행 모두가 애매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상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상대별 분쟁전개를 분석해본 결과 미국이나 케언즈 그룹은 분쟁제소와 피소에서 모두 적극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EU가 제소한 분쟁은 양자합의가 매우 힘들고 농산물 관련 분쟁의 비중이 높은 회원국들은 패널절차보다 양자합의를 이루는 경향이 컸다. 한편 분쟁해결의 결과를 보면 특히 미국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의 성과가 좋지 않은데 이는 UR 당시부터 작용해온 미국의 영향력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이 제기한 분쟁의 성과가 좋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양자합의를 이끌지 못하면서 또한 패널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UR 협상에 따른 농업 관련 협정의 내용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은 WTO 출범 이후 농업 관련 분쟁에서 대체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들 농산물 수출국들의 한국에 대한 분쟁제기가 WTO 초기 몇 년에 집중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불만 사항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그만큼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이 WTO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최근에 이들 농산물 수출국 다수와 FTA 협정까지 체결할 정도로 농산물 수입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중단 상태에 있지만 WTO의 DDA 협상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면 다자간 체제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²³ 따라서 한국은 지역주의에 입각한 FTA뿐만 아니라 WTO의 다자간 체제의 상황 변화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해외시장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듯이 UR 이후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듯하다. 그러나 만일에 있을 추가적인 시장개방 논의에 대비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다른 농산물 수입국과의 공조방안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 문헌

- 권영민. 1998. 「WTO 체제 출범 이후의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김덕웅. 1995.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우리 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행정연구」 제25권. pp. 41-63
- 김두수. 2013. “EU 유전자변형생물체(GMO)규범체계를 통해 본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식품안전과 환경보호.” 「국제경제법연구」 제11권 제2호. pp. 29-78.
- 김민철, 최재영. 2010. “터키-쌀 사건에서의 WTO 관련쟁점분석.” 「국제경제법연구」 제8권 제2호. pp. 181-210.
- 마재신. 1999. “WTO의 농업협정에 대한 이해.” 「통상법률」 제30호 pp. 6-29.
- 박은영. 2001. “우리나라에 대한 WTO 쇠고기 분쟁과 GATT 1994 해석의 문제.” 「농촌경제」 제24권 제4호. pp. 119-139.
- 박재근, 임재환, 구승모. 2002. “WTO 체제하의 쌀 생산전략: 영농규모화사업을 중심으로.” 「농업과학연구」 제29권 제2호. pp. 135-148.
- 성영화, 박명섭. 2010. “미국-브라질 WTO 면화보조금 분쟁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법률」 제92호. pp. 81-119.

23 2013년 부분합의를 이룬 발리패키지(Bali Package)를 실행하기 위한 무역원활화협정이 지난해 11월 체결되어 현재 각국의 비준을 기다리는 등 DDA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이 최근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양승룡, 임성수 2005. “WTO 분쟁사례 분석과 함의: 농산물 무역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2권 제4호 pp. 767-786.
- 이성덕. 1996. “WTO 협정상의 보조금 규제: 농업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비교.” 「통상법률」 제10호. pp. 7-26.
- 이신규. 2000.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관세학회지」 제1권 제1호. pp. 299-319.
- 이용기. 2003. “WTO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성.” 「농업경제연구」 제44권 제4호. pp. 199-219.
- 이정환 외. 1995. 「WTO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도」. 정책연구보고 P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종혁 외. 1996. 「WTO 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연구」. 수탁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유철 외. 2000.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정책연구 0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정빈, 김동민. 2000. “차기 WTO 농업협상의 관세할당제하의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분석: 관세인하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제4권. pp. 75-92.
- 채욱, 서창배. 1999.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자료논문 99-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세균 외. 1996. 「WTO 출범 이후 농산물 무역 자유화 논의 동향과 대책」. 연구보고 R3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2002. “WTO 농업협상 관세감축 방식 분석.” 「농촌경제」 제25권 제4호. pp. 15-30.
- 최승환. 2007. “EC-GMO 사건의 법적 평가: 자유무역의 승리인가?”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pp. 549-579.
- Anderson, K. and Nielsen, C. P. 1997. “GMOs, food safety and the environment: what role for trade policy and the WT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gricultural Economists*. vol. 24, pp. 61-85.
- Anderson, K. 2000. “Agriculture’s ‘multifunctionality’ and the WTO.” *The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vol. 44, no. 3, pp. 475-494.
- Besson, F. & Mehdi R. 2004. “Is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Biased Against Developing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uropean and International Political & Economic Affairs*, Athens, Greece.
- Bown, C. P. 2005. “Participa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Complaints, Interest Parties, and Free Riders.”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9, Issue 2, pp. 287-320.
- Busch, M. L. & Reinhardt E. 2003. “Developing Countries and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 37, no. 4, pp. 719-735.
- Donna, R. 1998. Implementation of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e First Two Years.”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Working Paper # 98-4.
- Guyomard, H. 1993. “Agriculture in the Uruguay Round: Ambi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44, no. 2, pp. 245.
- Herrmann, R. and Krumb, M. and Monnich, C. 2003. “The banana dispute: survey and lessons”, *Quarterly Journal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vol. 42, no. 1, pp. 21-48.
- Honma, M. 2000. “Food security and WTO negotiations on agriculture.” *Quarterly Journal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vol. 39, no. 4, pp. 21-48, 359-378.

- Holmes, P., Rollo, J. & Young A. R. 2003. "Emerging Trend in WTO Dispute Settlement, Back to the GATT?"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133.
- Horn, H. & Mavroidis P. C. 2008. *The WTO Dispute Settlement Data Set 1995-2006, User's Guide, Version 2.0*
- Horn, H., Mavroidis P. C., & Nordström H. 1999. "Is the Us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Baised?"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2340.
- Hudec, R. E. 1997. "Does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ork? Agricultural Disputes after the Uruguay Round."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San Diego.*
- Josling, T., Zhao L., Carcelen J., and Arha, K. 2006. "Implications of WTO Litigation for the WTO Agricultural Negotiations." *International Food & Agricultural Trade Policy Council, Issue Brief*, 19.
- Josling, T. 2009. "Agricultural Trade Dispute in the WTO", Elsevier Series on *Frontiers of Economics and Globalization*. vol. 6. Part 4, Chapter 10, pp. 245-282.
- Kastner, J. and Powell. D. 2002. "The SPS Agreement: Addressing historical factors in trade dispute resolution."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vol. 19, no. 4, pp. 283-292.
- Mah, Jai S. 1999. "Reflections on the Special Safeguard Provision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of the WTO." *Journal of World Trade*. vol. 33, no .5, pp. 197.
- O'Connor, B. 2003. "A Note on the Need for More Clarity in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Journal of World Trade*. vol. 36, no. 2, pp. 839-846.
- Rayner, A. J. 1993. "Agriculture in the Uruguay Round: An Assessment." *The Economic Journal*. vol. 103, no. 6, pp. 1513.
- Thomson, K. J. 1996. "The CAP and the WTO after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vol. 1, no. 2, pp. 169-184.
- Walkenhorst, P. 2004.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WTO process: evidence concerning the SPS Agreement." *Quarterly Journal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vol. 43, no. 2, pp. 113-132.

(on-line 통계출처)

Dispute Settlement Homepage, WTO.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pu_e/dispu_e.htm>.

FAO Stat, FAO. <faostat3.fao.org/home/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WTO Dispute Settlement Database, World Bank .<<http://go.worldbank.org/X5EZPHXJY0>>.

원고 접수일: 2014년 12월 16일
원고 심사일: 2014년 12월 23일
심사 완료일: 2015년 6월 16일

부표 1. 한국의 분쟁

DS	제목	양자협약의 요청	분쟁 상대	현재 상태	보고서 채택	관련조항	
제 소	89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lour television receivers from Korea	1997.7.10.	미국	양자 합의		AD:1,2,2.1,3.1,3.2,3.6,4.1,5.4,5.8,5.10,11.1,11.2,11.4; GATT:VI,VI.1,VI.6(a)
	99	Anti-dumping duty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 of one megabyte or above from Korea	1997.8.14.	미국	이행 합의	1999.3.19.	AD:6,11;GATT:VI,XXIII.1(b)
	179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an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from Korea	1999.7.30.	미국	이행 통보	2001.2.1.	AD:2,6,12;GATT:VI
	202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2000.6.13.	미국	이행 통보	2002.3.8.	GATT:IX.3,XIII,XIX.1; SG:2,3,4,5,11,12
	215	Anti-dumping measures regarding polypropylene resins from Korea	2000.12.15	필리핀	양자 합의		AD:2,3,5,6,7,9,12,AnnII; GATT:VI
	217	Continued Dumping & Subsidy Offset Act of 2000 (Australia, Brazil, Chile, EU, India, Indonesia, Japan, Thailand 공동)	2000.12.21	미국	보복 승인	2003.1.27.	AD:1,5,4,8,18.1,18.4; GATT:VI.2;SCM:1,4,4.10,5,6,7.9,10,11,4,18,32.1,32.5;SG:2.1,2.2,3,4,5,7.1,7.4,8.1,9.1,12; WTO:XVI.4
	251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2002.3.20.	미국	패소 판결	2003.12.10	GATT:IX,XIX,XIX.1(a); WTO:XVI.4
	296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 from Korea	2003.6.30.	미국	이행 통보	2005.7.20.	GATT:VI.3,X.3; SCM:1,2,10,11,12,14,15.1,15.2,15.4,15.5,17,22,32.1
	299	Countervailing measures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chips from Korea	2003.7.29.	EU	이행 통보	2005.8.3.	GATT:VI.3; SCM:1,2,10,11,12,14,15,15.1,15.2,15.4,15.5,17,22,32.1
	301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307과 동일사안)	2003.9.3.	EU	이행 합의	2005.6.27.	DSU:23.1,23.2;GATT:I.1,III.4,XI.1; SCM:1,2,3.1,4,5(a),5(b),5(c),6.3(a),6.3(b),6.3(c),6.4,6.5,7,32.1
	323	Import quotas on dried laver and seasoned laver	2004.12.1.	일본	양자 합의		AG:4.2;GATT:X.3,XI
	336	Countervailing Duties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 from Korea	2006.3.14.	일본	패널 권한 종료	2007.12.17	GATT:VI.3,X.3; SCM:1,2,10,11,12,14,15,15.5,19.1,9.1,21,22,32.1

DS	제목	양자협약의 요청	분쟁 상대	현재 상태	보고서 채택	관련조항
402	Use of Zeroing in Anti-Dumping Measures Involving Products from Korea	2009.11.24	미국	이행 통보	2011.2.24.	AD:1,5,8,2.1,2.4,2.4.2; GATT:VI
3	Measures concerning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1995.4.4.	미국	양자협약		AG:4;GATT:III,XI; SPS:2,5; TBT:5,6
5	Measures concerning the shelf-life of products	1995.5.3.	미국	양자협약		AG:4;GATT:III,XI; SPS:2,5; TBT:2
20	Measures concerning the bottled water	1995.11.8.	캐나다	양자협약		GATT:III,XI,XXIII.1(b); SPS:2,5; TBT:2
40	Laws, regulations and practices in the telecommunications procurement sector	1996.5.9.	EU	양자협약		GATT:I,III,XVII,XXIII.1(b)
41	Measures concerning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1996.5.24.	미국	양자협약		AG:4;GATT:III,XI; SPS:2,5,8; TBT:2,5,6
75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1997.4.2.	EU	이행 통보	1999.2.17.	GATT:III.2
84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1997.5.23.	미국	이행 통보	1999.2.17.	GATT:III.2
98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1997.8.12.	EU	이행 통보	2000.1.12.	GATT:XIX;SG:2,4,5,12
161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1999.2.1.	미국	이행 통보	2001.1.10.	AG:3,4,6,7; GATT:II,III,XI,XVII; ILA:1,3
163	Measures affecting government procurement	1999.2.16.	미국	승소 판결	2000.6.19.	GATT:XXIII.1(a),XXIII.1(b); GPA:III.1, VIII,XI,XVI,XX
169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1999.4.13.	호주	이행 통보	2001.1.10.	AG:3,4,6,7; GATT:II,III,XI,XVI; ILA:1,3
273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2002.10.21	EU	이행 통보	2005.4.11.	SCM:1,2,3,1,5(a),5(c),6,3,6,5
312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paper from Indonesia	2004.6.4.	인도네시아	미이행 판정	2005.11.28	AD:1,2,1,2,2,2,2.1,2.2,2,2,4,2,6,3,1,3,2,3,4,3,5,4,1(i),5,2,5,3,5,4,5,7,6,1,2,6,2,6,4,6,5,6,5,1,6,5,2,6,7,6,8,6,10,9,3,12,1.1(iv),12,2,12,3,AnnI,AnnII.3,AnnII.6,AnnII.7; GATT:VI.1,VI.2,VI.6
391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2009.4.9.	캐나다	양자협약		GATT:I.1,III.4,V.2,V.3,V.4,XI.1,XXIII.1(b);SPS:2,2,2,3,3,1,3,3,5.1,5,5,5,6,5,7,6,1,8,AnnC

피소